

KDBpension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및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실제 계약에는 KDBpension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 이 예금은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KDBpension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분할인출, 만기 시 자동 재예치 가능

2 거래 조건

구분	내용						
가입자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형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단, 만기일지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내 가입가능) 사전지정운용형(디폴트옵션형) : 3년 						
거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퇴직연금 운용상품 지정 필요)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금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적용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 '홈페이지(www.kdb.co.kr) > 금융상품몰 > 퇴직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만기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이자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계산기간 : 신규일 ~ 만기일 전일 이자계산방법 : 신규금액 × 적용이율 × 일수 ÷ 365 						
만기후 이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경과기간</th> <th>만기후 이율</th> </tr> </thead> <tbody> <tr> <td>만기후 1년 이내</td> <td>만기후 일자별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1년) 기본이율의 1/2</td> </tr> <tr> <td>만기후 1년 초과</td> <td>만기후 일자별 고시된 보통예금 적용이율</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	만기후 1년 이내	만기후 일자별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1년) 기본이율의 1/2	만기후 1년 초과	만기후 일자별 고시된 보통예금 적용이율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					
	만기후 1년 이내	만기후 일자별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1년) 기본이율의 1/2					
만기후 1년 초과	만기후 일자별 고시된 보통예금 적용이율						
※ 해당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하여 이자 계산							

구분	내용
----	----

• 일반형

매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차등하여 적용

구분	납입기간 경과비율 ^{주1)}	중도해지이율 ^{주2)}
납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	연 0.1% ^{주3)}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20% 미만	기본이율 ^{주4)} ×10%
	20% 이상~ 40% 미만	기본이율×20%
	40% 이상~ 60% 미만	기본이율×40%
	60% 이상~ 80% 미만	기본이율×60%
	80% 이상~100% 미만	기본이율×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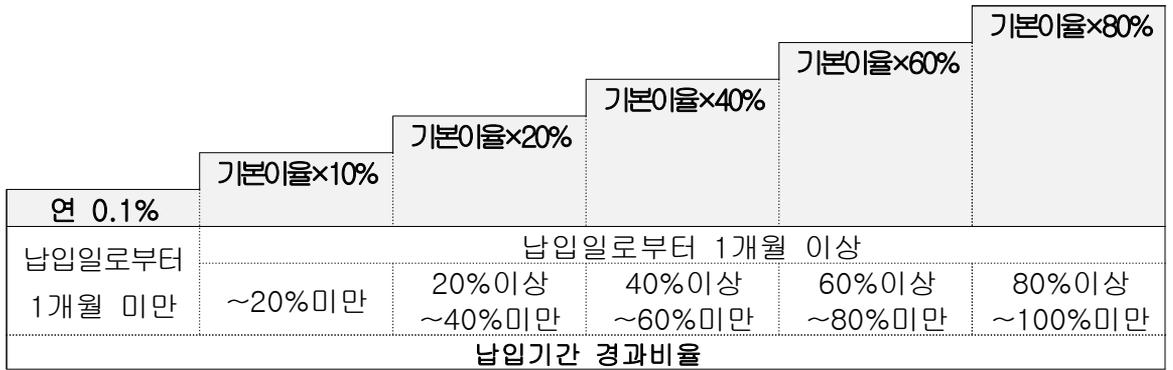
주1) 납입기간 경과비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주2) 중도해지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주3) 납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납입 건은 가입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적용

주4) 기본이율 : 가입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중도해지이율
(‘25.8.25 기준,
세전)



※ 위 그림은 기본이율, 경과비율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

• 사전지정운용형 (디폴트옵션형) : '25.6.2. 이후 가입건

매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차등없이 중도해지이율을 동일하게 적용

구분	중도해지이율 ^{주1)}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	기본이율 ^{주2)} ×80%

주1) 중도해지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주2) 기본이율 : 가입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구 분	내 용
-----	-----

※ 단, “25.6.1. 이전 가입건”에 대해서는 매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차등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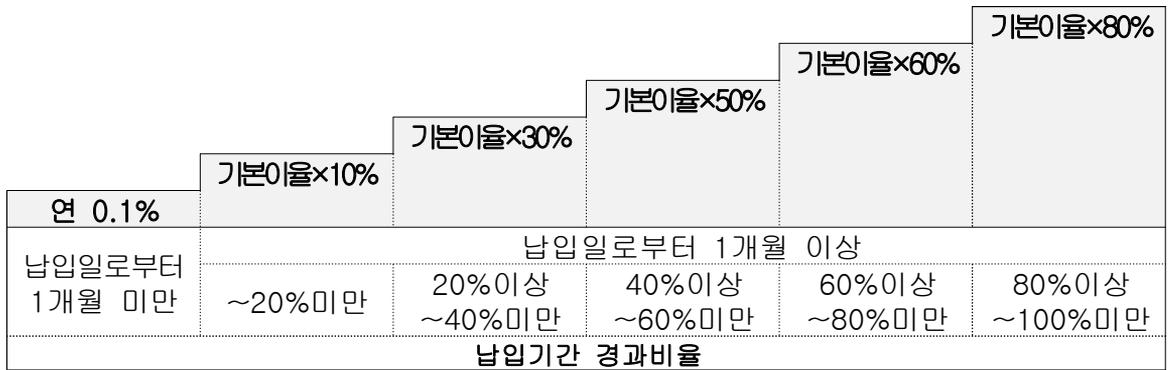
구분	납입기간 경과비율 ^{주1)}	중도해지이율 ^{주2)}
납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	연 0.1% ^{주3)}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20% 미만	기본이율 ^{주4)} ×10%
	20% 이상~ 40% 미만	기본이율×30%
	40% 이상~ 60% 미만	기본이율×50%
	60% 이상~ 80% 미만	기본이율×60%
	80% 이상~100% 미만	기본이율×80%

주1) 납입기간 경과비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주2) 중도해지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주3) 납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납입 건은 가입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적용

주4) 기본이율 : 가입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 위 그림은 기본이율, 경과비율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	--

계약해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단,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금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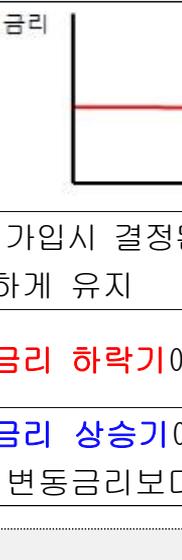
특별중도해지 이율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기간 1년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이율</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기간 1년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2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2년 만기 이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예치시 : 이 예금의 3년 만기 이율</td> </tr> </table> <p>※ 사전지정운용형(디폴트옵션형)으로 가입하여 해당 기간의 만기이율이 없을 경우 일반형(DC/IRP)의 해당기간 이율을 적용합니다.</p> <p>※ 단, 하단의 특별중도해지사유 7항 및 13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별 만기 이율을 적용합니다.</p>	계약기간 1년 이하	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이율	계약기간 1년 초과	1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	1년 이상 2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2년 만기 이율	3년 이상 예치시 : 이 예금의 3년 만기 이율
계약기간 1년 이하	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이율							
계약기간 1년 초과	1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							
	1년 이상 2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2년 만기 이율							
	3년 이상 예치시 : 이 예금의 3년 만기 이율							

구 분	내 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다음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2.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4.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5.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6.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업무 사임 7.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8.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9. 가입자의 사망 10. 가입자의 해외이주(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한함) 11.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한함) 12. 동일 자산관리 기관 내 계약 이전 및 제도 전환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분할인출	가능	2회(만기해지 제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분할인출 횟수에서 제외하며 분할인출 하는 금액에 대하여 특별중도해지 이율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2.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4.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5. 동일 자산관리 기관 내 계약이전 및 제도 전환하는 경우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만기처리방법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단, 사전지정운용형(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편입된 경우 재예치
	확정급여형(DB)	만기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하며,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함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능	

구분	내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DC/IR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해당</p>  </div>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p>
	DB	<div style="text-align: center;"> <p>비해당</p>  </div>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세제혜택	불가능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기타사항	통장발급 불가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한국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시장상황,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이율은 '25. 8. 25. 현재 기준이며, 시장금리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고정형 정기에금은 금리하락기에 금리가 고정되어 이율 하락이 없으나, 금리 상승기에도 이율 상승효과가 없어 변동금리형 상품대비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 형태		
특징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장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
단점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한국산업은행 수신기획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88-1500), 금융민원센터(02-787-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d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을 하시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www.fss.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